##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03

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:성일종・이종배・이명수

김희국・추경호・김태흠

태영호 · 한기호 · 김형동

이태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금융 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,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.

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,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.

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을 유도하는 경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, 현행 법상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고 금 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착오송금인은 회수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려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.

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,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,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히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.

이처럼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(안 제18조제1항).
- 나.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,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,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, 제26조제1항, 제26조의4).
- 다.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

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(안제39조의2).

라. 소송제기 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통신사업 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, 연락처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의3).

##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"착오송금"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,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(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)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.
- 10. "자금이체 금융회사등"이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제6호까지의"를 "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"로 한다.

6의2.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구제

제24조의3제1항 중 "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"을 "예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구제계정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예금 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"을 "예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구제 계정은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 의"를 "예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또는 착오송금구제계정의"로 하고, 같 은 항 제1호 중 "제5호 및 제6호에"를 "제5호, 제6호 및 제6호의2에" 로 한다.

제2장제5절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4(착오송금구제계정 설치 및 운영)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구제계정(이하 "구제계정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제26조에 따른 차입금
- 2.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
- 3.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
- ③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- 1.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(이하 "매입금액"이라 한다)과 그 부대비용
- 2.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
- 3. 그 밖에 구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서 정하는 사항
- ④ 공사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.
- ⑤ 구제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- 제39조의2 앞의 "제5장 벌칙"을 "제6장 벌칙"으로 하고, 제39조의2를

제39조의4로 하며, 제5장(제39조의2 및 제39조의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5장 착오송금 피해구제

- 제39조의2(매입대상 등)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,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.
- 제39조의3(관계기관등의 협조)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 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공사는 착오송금 구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, 지방자치단체,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·연합회·협회(이하 이 조에서 "관계기관등"이라 한 다)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수취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
  - 2.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

- ③ 공사는 수취인의 자진반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통신사업자"라 한다) 장에게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공사가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 및 통신사업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
제4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거짓으로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을 신청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9. "착오송금"이란 송금인의 착
	오로 수취금융회사, 수취계좌
	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
	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
	(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
	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
	다)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10. "자금이체 금융회사등"이란
	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
	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
	<u>한다.</u>
제18조(업무의 범위) ① 공사는	제18조(업무의 범위) ①
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	
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의2.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
	피해구제_
7. 제1호부터 <u>제6호까지의</u> 업무	7 <u>제6호까지 및 제6</u>

에 부대하는 업무

8. • 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조의3(구분 회계처리) ① <u>예</u> 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 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- ②·③ (생 략)
- ④ <u>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은</u>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.
- ⑤ · ⑥ (생 략)

제26조(차입)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한국은행법」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, 한국은행, 부보금융회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(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

<u>호의2의</u>
8.•9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3(구분 회계처리) ① <u>예</u>
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및 착오
<u> 송금구제계정은</u>
<u>.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예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및
착오송금구제계정은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차입) ①
예금보험기금, 상환기금 또는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
한다)만 할 수 있다.

- 1. 제18조제1항<u>제5호 및 제6호</u> <u>에</u> 따른 업무의 수행
- 2. · 3. (생략)
- ② (생략)

<신 설>

- \_\_\_\_\_\_
- 1. -----<u>제5호, 제6호 및</u> 제6호의2에\_----
  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  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26조의4(착오송금구제계정 설 치 및 운영)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구제를 위 하여 공사에 착오송금구제계정 (이하 "구제계정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 -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- 1. 제26조에 따른 차입금
  - 2.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
  - 3.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
  - ③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용도에 사용한다.
  - 1.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(이하 "매입금액"이라 한다)과그 부대비용
  - 2.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

<u><신</u> 설> <신 설>

<신 설>

- 3. 그 밖에 구제계정의 설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
- ④ 공사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준용한다.
- ⑤ 구제계정의 운영에 관하여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제39조의2(매입대상 등) ① 공사 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 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 구제계정의 부담 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 상,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 한다.

제39조의3(관계기관등의 협조)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

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공사는 착오송금 구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·연합회·협회(이하 이 조에서 "관계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수취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
 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
- ③ 공사는 수취인의 자진반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전기통신사신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통신사업자"라 한다)의 장에게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공사가 제1항 부터 제3항에

## 제5장 벌칙

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 · 2. (생략) <신 설>

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관계기관등 및 통신사업자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벌칙

제39조의2(벌칙) 제21조의4에 따 제39조의4(벌칙) (현행 제39조의2 와 같음)

세41조(벌칙)	

- 1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거짓으로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을 신 청한 자